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1. 12. 20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11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1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(2011.12.1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정희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, 2011. 5.23. 지방공무원법 개정예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이 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-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이 현 영)

- 이 폐지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고용직공무원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2011. 5. 23일 공포되어 2011. 8. 24일 시행됨에 따라 폐지의 원인이 발생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- 고용직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주로 급사, 사환, 청소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행정환경이 기계화, 전산화가 되고 민간 위탁 영역이 점차 넓어지면서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소멸하게 되었음.
- 사실상 존재하고 있지 않은 고용직공무원 직종은 공무원인력 효율화 차원에서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됨.
- 따라서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에서 고용직공무원 직종이 폐지되었고 우리구에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 86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, 2011. 5.23. 지방공무원법 개정예 따라 고용직공무원이 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조례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(고용직공무원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합의사항 없음

라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